

보도 일시	2023. 2. 21.(화) 11:00 2. 22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3. 2. 21.(화) 09:00
담당 부서	농업정책관 농지과	책임자	과 장 이승한 (044-201-1731)
		담당자	사무관 복옥규 (044-201-1742)

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

-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,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-

주요 내용

□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지연금* 제도개선 추진

*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

○ (가입연령 인하)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*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

*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상품

○ (상품 개선) 연금상품 유형을 다양화하여 가입자 선택 폭 확대

- ①(임대형 우대상품 도입) 한국농어촌공사(이하 “공사”)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 5% 추가 지급

- ②20년형 상품 추가

* (기존) 5년형, 10년형, 15년형 → (개선) 기존 + 20년형

- ③가입자가 언제든지 연금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

* (기존) 3년에 1회씩 중도(부분) 상환 허용 → (개선) 언제든지 중도(부분) 상환 가능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
첫째,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,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둘째,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(5년, 10년, 15년)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.

❖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(농식품부 고시 2019-91호)

- ▶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(83세, 통계청)을 감안하여 설정(예시 : 5년형 + 78세 가입 = 83세까지 보장)

기간형	5년형	10년형	15년형	+	20년형
가입연령	만 78세 이상	만 73세 이상	만 68세 이상		만 63세 이상

셋째,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%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신규 출시하여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공사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.

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.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(입법예고(2.21.~4.2.))」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,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.

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“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” 라고 밝혔다.